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00
----------	-------

발의연월일 : 2026. 4. 24.

발 의 자 : 서지영·이현승·고동진  
조승환·서천호·김미애  
곽규택·정성국·정동만  
박충권·성일종·나경원  
이성권·최수진·김대식  
박성훈·김도읍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어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도서·벽지지역 소재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은 가정의 경제 여건과 지역의 디지털 교육 여건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학습기회와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도서·벽지지역 소재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에 대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에게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되는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사용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0조의3(학습지원    소프트웨어</u>  <u>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u>  <u>치단체는    균등한    교육기회를</u>  <u>보장하기 위하여 「도서·벽지</u>  <u>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u>  <u>지의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u>  <u>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u>  <u>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u>  <u>학생에게 교육과정 운영에 사</u>  <u>용되는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u>  <u>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u>  <u>구입비 및 사용료를 지원하여</u>  <u>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u>  <u>·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u>  <u>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